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2010. 4. 1. 개정)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갑)			처리기간 2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출처	금융기관		이민일자	
확인서의 사용목적	해외송금	여권번호	전화번호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0*-00**** (20**.. ** . ** .)		
확인금액	**0,000,000 원(미화 \$)			
	【 년 월 일 확인서 발급금액 원 포함】			
자 금 출 처 내 역				
자금출처	금액	자금원천	비고	
계	**0,000,000			
예금 · 적금	**0,000,000	주식양도대금		
신탁계정				
원화대출금				
임대보증금				
기타				
<p>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인서 발급되는 날 현재 자금출처가 위와 같이 확인됨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세무서장 귀하</p>				
<p>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세무서장 인</p>				
<p>※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예입과 관련한 자금 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p> <p>※ 유의사항 : - 비고란에는 자금의 원천을 간단하게 기재합니다. - 확인금액은 국외 반출되는 전체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누계금액으로 표기합니다.</p> <p>※ 원화대출금 · 임대보증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및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말합니다</p>				

